

대구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나313842(본소), 2020나324316(반소) 판결
[공사대금 · 정산금반환청구]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나313842(본소), 2020나324316(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가소20984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기, 이수광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병홍

변론 종결 2022. 5. 18.

판결 선고 2022. 7. 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가소20984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88,13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2022. 7.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7,188,1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동시 D건물 내 볼링장 금속 및 수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6. 3.부터 2019. 6. 2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9.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9. 6. 13. 11,000,000원, 2019. 7. 11. 15,000,000원, 2019. 8. 29. 10,000,000원, 2019. 9. 24. 5,000,000원 합계 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1,800,000원(계약금액 52,800,000원 -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41,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견적서(금액 52,000,000원)에 기재된 것보다 적은 물량을 시공하였다. 실제 원고가 시공한 물량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은 36,324,069원(부가세 포함)으로서 피고는 이미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1) 2) 판단 갑 제3, 5, 7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시공물량 중 상당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실제 시공한 물량에 상응하는 36,324,069원(부가세 포함)을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에게 공종별로 재료비와 노무비 단가를 특정하여 총 견적금액을 52,012,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견적금액을 기초로 공사대금을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19. 6.경 및 2019. 7.경 당시까지의 공종별 시공면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위

시공면적에 위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2019. 8. 31. 작성한 최종청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총 공사대금을 47,124,000원(당초 약정하였던 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44,000,000원 + 추가 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3,124,000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가 당시까지 지급한 36,000,000원을 뺀 나머지 11,124,000원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52,800,000원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시공한 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47,100,000원²⁾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전체 공사대금으로 주장하면서 위 47,1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4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1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 견적서에 기재된 시공면적과 실제 시공면적에 많은 차이가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원고와 피고 역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따라 추후 공사대금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감정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단가를 기초로 위 견적서상의 시공면적과 원고가 실제로 시공한 면적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36,324,069원으로 산정하였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위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AL 루바 천장시공' 부분과 '알루미늄 천장재 시공' 부분의 시공면적을 변경하거나, 피고 대표이사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36,324,069원을 초과하는 41,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청구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실제 시공물량에 상응하는

36,324,069원을 초과하는 4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675,931원(= 41,000,000원 - 36,324,069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과다 지급한 600만 원 반환청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D건물 내 복도 및 화장실 천정마감 공사 등을 도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6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의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D건물 내 복도 및 화장실 천정마감 공사 등을 도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견적금액은 52,000,000원으로 하고, 4,000,000원을 네고하고 48,000,000원 계약한다(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우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6,000,000원이 아니라 4,000,000원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52,800,000원은 위 견적금액 52,000,000원에서 4,000,000원을 뺀 나머지 48,000,000원에 10%의 부가세를 더한 금액임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4,000,000원의 공제 합의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정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다시 4,000,000원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이에 비추어 을 제8호증의 기재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6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의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집행한 금원의 반환청구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채118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0. 8. 10. 6,512,200원을 추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취소하므로 가집행선고도 실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512,2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1,188,131원(= 4,675,931원 + 6,512,2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영

판사윤남현

판사장래아

1) 피고는 최초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 완료 후 시공물량을 확인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러한 합의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과 달리 미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명확히 하였다.

2) 원고가 2019. 8. 31. 작성한 최종청구서상 47,124,000원에서 10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보인다.